

농자재 안전사용 교육자료 요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관리 및 안전사용

영국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2017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의 안전사용

1 농약이란?

농촌진흥청 농약등록팀 ☎ 063-238-0825

농약의 정의

-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 포함)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농약관리법 제2조)

농약의 등록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균,충,잡초 및 생리 기능 증진·억제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품목)을 평가하여 농약으로 등록

신청인 (신청서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학시험 • 약효·약해시험 • 독성시험 • 잔류시험 	⇒	• 접수, 검토	⇒	• 평가
	⇐	• 심의, 등록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	• 결과보고

농약의 등록현황

- 국내에 등록되어 사용 중에 있는 농약의 종류는 1970년에 148종에 불과하였으나, 2016.11월 현재 1,947종으로 계속 증가함.



- ▶ 맹독성 농약은 없으며, 고독성 농약은 산림용이거나 검역·저장 해충용 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일반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은 없음

농약의 포장지 표기

- 농민이 농약을 선택할 때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농약의 종류 별로 포장지와 병뚜껑의 색깔을 달리하고 있음



- 농약의 용도, 독성 정도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하여 표기

농약의 용도 표기 : 바탕색

- 바탕색은 같은 계열의 색깔을 배색하여 다른 용도와 혼동되지 않도록 함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비선택성 제초제	생장조정제	기타약제	혼합제 및 동시방제용농약
분홍색	녹색	황색	적색	청색	백색	해당농약색깔 병용

- 액체상태인 제초제의 경우에는 용기 마개의 색깔을 황색으로 함
- 액체 농약의 경우 용기 또는 포장지에 눈금 표시

농약의 독성 표기 : 색띠

저독성	보통독성	고독성
청색	황색	적색



부정·불량 농약

< 부정농약의 유형 >

- 농약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농약
- 농약으로 품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
- 수입업 등록 없이 밀수입한 외국산 농약
-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위·변조)로 표시한 농약
- 개포장 또는 분포장한 농약

< 불량농약의 유형 >

-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된 농약
-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
- 자체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
-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품목의 동일 모집단 농약

< 불량농약 식별요령 >

- 라벨(농약포장지)에 등록번호가 표시 안된 농약
- 일정 판매장소 없이 점조직형태로 판매하거나 또는 차량으로 이동 판매하는 농약
- 라벨을 위·변조한 부정농약의 경우 인쇄내용이 조잡하거나 수축테이프 등 실링이 부실한 농약
- 불법 밀수입농약의 경우 주로 외래어로만 표시된 농약
- 모든 병해충 또는 식물생육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 농약



무등록 밀수 농약(아버멕틴, 지베렐린)

약효보증경과 농약

개포장 농약

2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올바른 농약 사용법

농촌진흥청 농약등록팀 ☎ 063-238-0825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이란 수확 농산물 중 잔류농약 최소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농작업자 농약 중독 예방 등을 위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구체적 기준은 아래와 같음

1) 농약의 “적용 대상 농작물, 적용 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하고,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농약의 “사용시기”, 재배기간 중의 “사용가능횟수”를 준수할 것

- 농약의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 설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예시)】

농 약	적용작물	적용병해충	사용시기 (~까지)	횟수 (~이내)
클로르페나피르 유제	썩갓	파밤나방	수확 7일 전까지	2회 이내

예) 클로로페나피르 유제는 썩갓의 파밤나방약으로 사용할 때 수확 7일전까지 2회 이내로 농약을 살포하면 수확한 썩갓의 잔류량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3)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 사용 및 판매 시 처벌규정 강화

- 판매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농약관리법 제40조: 과태료)
 -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
- 농약사용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농약관리법 제40조: 과태료)
 - ※ 1차 위반 4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80만원

올바른 농약 사용

- 1) 방제대상(작물, 적용 병·해충·잡초)에 대해 등록된 농약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
 - 적용 병·해충·잡초에 대한 약효가 이미 검증되어 방제효과가 큼
- 2) 방제대상의 발생 생태와 예찰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살포 할 것
 - 수확 직전에는 최종살포일을 지켜야 잔류를 방지할 수 있음
- 3) 작용특성(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농약을 바꾸어 가면서 사용할 것
 - 한 가지 농약만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병해충이 그 약제에 대하여 내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짐
 - 같은 농약을 한 작물에 여러번 살포하면 농약잔류량이 증가할 수 있음
- 4) 농약포장지 표면(라벨)에 표기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사용방법 등을 지켜 사용할 것
 - 적용작물 및 병해충, 사용방법 및 사용량, 특징, 주의사항, 해독방법 등

▶ 주요 약해발생 원인

- 라벨에 표기된 적용작물 이외의 농작물에 사용 또는 고농도 살포
- 농약과 비료(4중복비 등)를 혼용하거나 혼용가부가 확인되지 않은 약제의 혼용에 의한 약제의 물리·화학적 변화
- 사용방법·주의사항 미준수 및 인접작물, 농경지 유실, 비산 등에 의한 유입
- 제초제 등 약제 살포 후에 방제기구를 세척하지 않고 다른 약제를 살포할 경우
- 특히 생장조정제를 적기, 적량, 해당 품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작용기작이 같은 농약은 연속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다1

살균제
다1

X

농약

살균제
가1

O

살균제
다1

O

동일 숫자나 영문 확인하세요!!

▶ 포장지 후면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병	사용시기 및 방법	1,000㎡(10a)당 사용량	연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파	역병	파종 전 토양혼화처리	6kg	파종전	1회 이내
고추 (단고추류)	탄저병	파종 전 토양혼화처리	6kg	파종전	1회 이내

농약

특징

- 이 농약은 요소계 약제로서 예방 및 치료효과를 겸비한 약제입니다.
- 이 농약은 독색색소균해병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 이 농약은 약효지속기간이 긴 약제입니다.

△취급제한기준

1. 이 농약은 양파를, 식물을 또는 사람의 부양원소와 균형하여 보관하십시오.

△약효·약해에 관한 주의사항

- 이 농약을 적용대상 작물 이외에는 약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전 및 기타 주의사항

- 이 농약은 마스크, 고무장갑, 방제복, 보안경을 착용하고 비닐을 등지고 뿌리시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 풍자를 뜯을 때 신체(눈, 코, 입, 피부 등)에 내용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성분

유효성분 : Fenoxauren 3%
기 타 : 계면활성제, 첨가제, 색소, 중량제 95.3%

◆ 사용한 뒤 농약 용기를 마를 수직항에 모아두면 단국화·생강나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십시오.

농약 포장지! 표시내용 이렇게 확인하세요

▶ 포장지 전면

살균제
다1

농약

등록번호: 00-살균-00
보통독성(생태독성등급)

작용기작 표시

잘들어 수화제 500g

경고문구

사용전에 표기내용을 잘 읽어 보세요!
표기내용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해독
응급처치

독성 색띠

고객상담번호 : 0000-0000

그림문자

마스크

고무장갑

방제복

이목경

물떨독성

누에독성

조류독성

RDA 농촌진흥청

한국작물보호협회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기타 주의사항

- 전에 사용하였던 제초제 약통을 완전히 깨끗하게 세척한 후 사용
- 전년도에 사용하였던 약통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 보관 필요
- 병해충 방제약제 2종 이상 혼용시 혼용 가부를 판단하여 살포
- 제초제 + 또 다른 제초제 혼용 사용 금지

농약의 보관요령

- 반드시 전용보관통에 보관
 - 살포한 후의 약제는 뚜껑을 꼭 닫고 빈병과 구별해서 숫자를 미리 확인한 다음 보관합니다.
 - 자물쇠가 달린 전용보관통을 마련하는게 좋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합니다.
- 다른 병에 옮겨 담지 않는다
 - 희석한 농약을 다른 병에 옮겨 담는 일은 위험천만입니다.
 - 어린이가 잘못 알고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드시 약이름을 쓴 용기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 빈병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유제는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빈병이라 해도 중독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양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빈병은 물로 씻어내어 말린 후 버립니다.

		
<p>농약 보관함에 보관하기</p>	<p>다른 병에 옮겨 담지 않기</p>	<p>빈병을 함부로 버리지 않기</p>

3

농약 중독사고와 예방대책

농약 중독사고

1) 농약중독 사고원인

- 피부를 통한 중독
 - 방제작업시 노출된 피부에 묻어서 일어나는 원인
- 입을 통한 중독
 - 막힌노즐을 불거나 농약이 묻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 섭취
- 흡입을 통한 중독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조제하거나 살포

2) 농약중독의 증상

- 국내 등록농약의 주요 농약중독 증상
 - 농약은 신경계나 효소계를 교란시키는 등 농약성분의 계통에 따라 작용 기구가 달라 중독 증상도 다름

대표적인 급성 농약중독 증상

-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무겁다.
- 온몸이 나른하다. 불안하다.
- 손발이 떨린다. 쥐가 난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가쁘다.
- 피부가 가렵고 두드러기나 붉은 반점이 생긴다.
- 땀이 많이 난다.
- 침을 많이 흘리고 입안에 궤양이 생긴다.

3) 농약중독시 조치요령

-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것
 - 증상의 중요도에 따라 행동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유지
- 오염물 제거
 - 환자의 격리 : 중독된 사람은 중독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농약이 더 이상 피부에 묻거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조치
 - 오염된 옷 제거, 피부, 머리 및 눈의 농약제거

- ▶ 응급의료상담(☎ 119)
- ▶ 온라인실시상담 : 순천향대 농약중독연구소
(<http://www.schmc.ac.kr/cheonan/honglab/index.do>)

○ 농약중독시 응급처치요령

- 농약을 삼켰을 때 : 다량의 물을 마시게 하고 환자의 목구멍 깊숙한 부분을 손가락 넣어 토하게 함
- 【주의】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경련을 일으킬 때는 토하게 하지 않음
- 흡입하였을 때 : 즉시 오염된 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흡입
- 피부에 묻었을 때 : 농약이 오염된 옷, 장갑 등을 벗기고 흐르는 물에 약 10분간 씻은 후에 비누로 잘 닦음
- 눈에 들어갔을 때 : 즉시 흐르는 물에 눈을 씻은 후 깨끗한 물에 얼굴을 대고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
- 환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는 숨이나 혀걸 등을 이(치아) 사이에 끼워 주어 자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치

○ 응급조치와 동시 혹은 직후에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음

-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는 중독시의 상황, 농약의 명칭, 마신 량, 마신 시각, 중독증상, 응급처치 사항, 포장지의 설명서 내용 등을 의사에게 자세히 말해 줌

○ 중독이 일어났을 때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

			
<p>호흡이 멈추었다면 → 즉시 인공호흡 실시</p>	<p>삼킨농약→ 목구멍에 가벼운 자극을 주어 구토 유도</p>	<p>오염원 제거→오염 된 옷을 벗기고 신체에 묻은 오염물을 씻음</p>	<p>응급조치와 동시→ 전문가 도움요청</p>

농약 살포자의 주의사항

○ 농약 살포 전의 주의사항

- 농약라벨(포장지)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읽음
- 살포에 적합한 방제복,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등의 보호장비를 준비
- 방제기구는 고장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비
-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살포작업하지 말 것

○ 농약 살포 중의 주의사항

- 살포액을 조제시에 피부노출이나 흡입노출을 피함
- 농약포장지의 사용약량(희석배수, 살포량) 준수
- 살포자의 체력유지를 위해 살포작업은 시원한 시간대에 살포
- 농약은 바람을 등지고 살포
- 주변 환경(하천, 양어장, 뽕밭 등)을 고려하여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 장시간 살포작업 금지, 통상 2시간 이내에 살포작업 종료
- 살포작업 중에 흡연, 음식물 섭취를 삼가
- 살포시에는 소지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유지

○ 농약 살포 후의 주의사항

- 농약 살포지역에 사람의 접근 금지
 - 분무가 가라앉고 마를 때까지 출입금지 표시를 함
- 살포후 남은 농약을 안전하게 처리
- 빈병, 빈봉지의 처분을 확실히 한다.
- 몸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다.
- 음주를 하지 않고 수면을 취하는 등 휴식을 취한다.
- 만일 몸에 이상이 감지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4

기타 주요사항

농촌진흥청 유통관리팀 ☎ 063-238-0831

무등록 농약 사용금지

○ 불법 외국산 밀수농약 사용금지

- 불법밀수 농약이나 무등록 농약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사람과 가축 환경에 해(害)를 줄 수 있습니다.
- 중국에서 밀수입된 지베렐린, 아바멕틴 등 사용금지



▶ 등록되지 않는 농약 사용 및 판매 시 처벌

- 판매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농약관리법 제32조: 벌칙)
- 농약사용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농약관리법 제40조: 과태료)

농약 가격표시제도

1) 농약가격 표시제 이행

- 모든 농약의 가격표시는 판매가격표시제로 시행
- 표시의무자
 - 농약 소매점포(도·소매 병행 점포 포함)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 농약 각 개별 상품, 진열대, 전지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함
- ※ 위반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시정권고 → (2차 위반~) 과태료(20~1,000만원)

2) 농약 판매가격 공개

- 주요 농약의 각 도별 최고, 최저가격을 농촌진흥청, 작물보호제판매협회 홈페이지 게시

- ▶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 농자재 → 농약부분
- ▶ 작물보호제판매협회(<http://www.greenseller.or.kr>)

- 전국 각 도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게시
 - 조사 품목은 출하금액 등을 고려 60개 품목 선정

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15.11월부터는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사용 및 판매시 과태료와 벌칙이 부과

*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9종, '11.12월) :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푸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 '메토밀 농약' 인명피해 사고 사례 >

- (농약소주) '16.3.10. 경북 청송군에서 농약포함 소주 음용사고(2명 사상)
 - (농약두유) '16.1.16. 충남 부여에서 농약포함 두유 음용사고(3명 사상)
 - (농약사이다) '15.7.16. 경북 상주에서 농약포함 사이다 음용사고(6명 사상)
- * 메소밀 특징 :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음(60kg 성인이 2.8g 섭취 시 반수 치사)

농약의 올바른 사용 · 보관 · 취급으로 농작물도 안전! 사람도 안전!

농약은 각종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하고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장을 촉진 또는 억제시켜 먹거리의 적기, 안정공급에 기여하는 필수자재로써 농약관리법에 의거, 엄격히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하고 절대 사람을 위해할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류·야생동물 등 적용대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농약은 반드시 자물쇠 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상자에 보관하는 등 보관 취급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고독성 농약(메토밀) 방치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 반납해주세요. **사용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판매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불량 농자재신고 포상금 지급

○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

- 농촌진흥청(063-238-8005), 해당 시·군·구 농약담당부서

구분	신 고 내 용	지급금액
농약	1.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50만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50만원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50만원
	4.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법 제21조제1항4호 단서조항 제외)	50만원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50만원
	6.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200만원
비료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 비료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한 행위	50만원
	2. 농약물질 등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분석성적서 등 증빙서 첨부시 지급)	50만원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분석성적서 등 증빙서 첨부시 지급)	50만원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 포함)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 이상 미달되는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분석성적서 등 증빙서 첨부시 지급)	50만원
	5.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50만원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20만원
	7.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20만원
	8.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20만원
	9.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원료 반입 내역 등 증빙서 첨부시 지급)	20만원

농약 빈병의 수거

- 농약 사용후 함부로 버려 물이나 토양이 오염되고 깨진 농약병에 의해 농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인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약 봉지류와 함께 현금을 지불하면서 수거하고 있음
 - 농가→마을별 공동 집하장→수거(한국환경공단, 농협)→재활용 업체
- ※ 농약봉지 2,760원/kg, 플라스틱용기 800원/kg
- 마을별 폐 농약 및 폐 농약 용기, 영농폐기물 수거함 설치
 - 각 자치단체별 자체 수거함 설치 운영

폐농약 수거함(예시)	폐농약 용기 수거함(예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1 투입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 개방</p>  </div> </div>	
<p>[설치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농약과 빈 농약병·봉지 수거로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제공 ○ 폐 농약 방류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 및 토양오염 방지 ○ 빈 용기 수거함 설치로 마을 공동기금 마련 ○ 자원 재활용, 외화 절약, 수거시간 절약 및 수거율 향상 	

비료의 등록 및 관리

1 비료란?

농촌진흥청 비료관리팀 ☎ 063-238-0829

비료의 정의

-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
 -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를 말함(시행규칙 제2조)

□ 보통비료

-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비료를 말함
예) 요소, 유안, 용성인비, 제1종복합비료 등 비료성분을 보증하는 비료

□ 부산물비료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비료

□ 공정규격

-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유효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
- 비료의 종류: 공정규격에서 비료의 종류란에 표시된 비료
예) 요소, 용성인비, 제2종복합비료, 퇴비, 가축분퇴비 등

□ 보증성분

- 비료업자가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예) 요소 : 질소전량 46%, 복합비료 : 질소전량 15%, 가용성인산 10%, 수용성가리 15%, 퇴비 유기물 30%이상 등을 말함

2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신고

가. 비료생산업 등록절차

□ 대 상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개정2007.8.3)

□ 등록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비 고
	시장(특별자치도 포함)·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신 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5px auto;"> 접수 ↓ 서류 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등록증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관 -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처리기간 - 14일(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신청 수수료 - 해당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발 급</div>		

나. 비료 수입업 신고절차, 서류제출 및 제한사항

□ 대 상

-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등록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비 고
	시장(특별자치도 포함)·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신 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5px auto;"> 접수 ↓ 검토결재 ↓ 신고증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관 -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처리기간 - 7일(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신청 수수료 - 해당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발 급</div>		

3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예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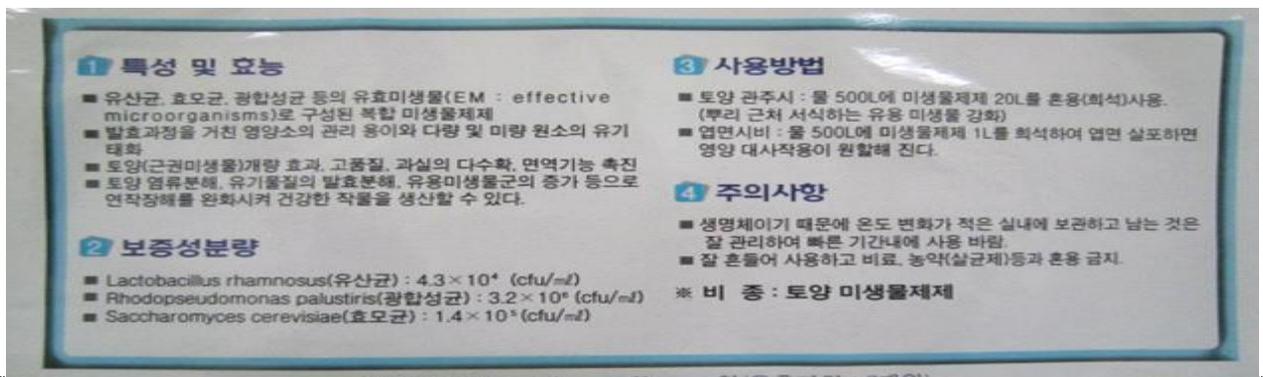
생산업자 보증표([] 보통비료, [] 부산물비료)

(앞쪽)

<p>1. 등록번호:</p> <p>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예시) 혼합유기질</p> <p>3. 실중량 또는 실용량: (예시) 20kg / 20ml</p> <p>4. 보증성분량: (예시) 질소전량 4%이상, 인산전량 2%이상, 칼리전량1%이상</p> <p>5. 원료명 및 배합비율(%): (예시) 대두박 60, 피마자박 20, 채종유박 20</p> <p>6. 생산연월일 : (예시) 2015. 1. 3.</p> <p>7. 유통기간:</p> <p>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예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전주비료산업사</p> <p>9.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포장의 여백에 기재할 수 있음)</p>
<p>생산업자</p> <p>주 소 : (예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p> <p>전화번호 :</p> <p>성명 또는 명칭 : 전주비료산업사 ○ ○ ○ (서명 또는 인)</p>

※ 주의사항: 한글로 표기하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보증표는 포장 또는 용기의 뒤쪽에 전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 사례 : 보증표시 위반비료 >



참고 1

주요 밀수농약 종류 및 근절 홍보

☐ 불법 밀수입 농약 리스트

일반명	상표명	제조국	적용작물	적용대상
지베렐린	지베레린	중국, 대만, 일본	배	비대 및 숙기촉진
아바멕틴	버티맥	중국	배, 사과 등	응애 등
파클로뷰트라졸	-	중국	쌈채소	생장억제
MCPB	마데꾸	일본	딸기 등	생장조절
치노메치오네이트	모레스탄	일본	참외, 수박 등	흰가루병

☐ 주요 불법밀수입 농약 유통근절 홍보

불법밀수 가짜농약 사용근절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불법밀수 농약이나 무등록 농약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사람과
가축 환경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당신의 행동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 중국산 밀수 아바멕틴



◎ 중국산 밀수 지베렐린

불법밀수 가짜농약 사용! 범죄행위입니다!



NO

불법밀수
가짜농약 사용
범죄행위
입니다!

- ◎ 제조판매업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 사용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신고자 포상금 : 200만원 지급

신고전화 063-238-8005

RDA
농촌진흥청

참고 2

부정불량 농자재 사례



무등록 밀수 농약(아바멕틴)

무등록 밀수 농약 판매



무등록 비료 판매

참고 3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상표명 및 대상작물

품목명	상표명	용도
메토밀 수화제	메소밀, 란네이트	진딧물, 담배나방 (고추, 사과 등)
메토밀 액제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진딧물, 담배나방 (고추, 사과 등)
디클로르보스 유제	디디브이피, 스킨, 옥구슬	잎말이나방(과수 등)
메티다티온 유제	수프라사이드, 명궁, 메치온, 메치사이드, 스프라치온	진딧물, 나방 등 (감귤, 사과, 가지 등)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모노포, 독무대, 데킬라, 아조드린	진딧물, 나방, 솔잎혹파 리 등 (감귤, 국화, 소나무)
벤푸라카브 유제	온콜	진딧물(감귤)
오메토에이트 액제	호리마트, 신무기	진딧물, 응애(사과)
이피엔 유제	이피엔, 무궁탄	진딧물, 나방 등 (사과, 배, 담배)
엔도설판 유제	지오릭스	담배나방(담배)

참고 4

메토밀 액제 회사별 상표명(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메소밀 액제 회사별 명칭



메소밀 액제 회사별 명칭

